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964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민간기록물 별도의 보존비용 지원부분을 삭제하고, 박물관 기능과 중첩될 우려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구매 규정 등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규정(안 제4조) 중
  -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민간기록물을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관리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기증이나 위탁보존,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을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 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까지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u>수집·보존</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u>수집·보존</u>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p>	<p>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 <u>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u> -----.</p> <p>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해당 기록물을 시장에게 위탁하여 보존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p>	<p>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u>개정안과 같음</u>)</p> <p>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관리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기증이나 위탁보존,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을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 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u>통합하여 운영할 때까지 적용한다.</u>
--	--	---------------------------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시와 관련이 있고 보존가치가 높거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체육 등 각 부문별로 시와 관련이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집·보존할”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를 각각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으로, 같은 호 중 “지원”을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를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영구기록물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을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로 한다.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수집·관리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기증이나 위탁보존,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을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법 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또는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까지 적용한다.



다.

<신 설>

제2조의2(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② · ③ (생략)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① -----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생략)

5.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은 위탁 또는 복제·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현행과 같음)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

3.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5. -----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

6. 시, 관할 공공기관 및 자치구의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7. (생략)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할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4. (생략)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리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음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3.~4.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영 제10조에 따라-----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3.~ 4.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 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  
-----  
--.